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56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김예지 · 고동진 · 송석준
김 건 · 유용원 · 김선교
안철수 · 김대식 · 박덕흠
김상훈 · 이달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적을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들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국가장의 대상자에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여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높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호 신설).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현저한 공헌을 세운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

나. 그 밖에 전쟁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현저한 공훈을 세운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그 밖에 전쟁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u></p>